

1999. 10. 21

제89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기획총무위원회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재영)

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1. 제안사유

-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구보 발행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 규제 정비 일환으로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자료수집(제11조)
 - 제11조 제4항 “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자료 제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개정하여 자료 제출자의 편의 도모

3. 검토의견

- 정보 그 자체가 어떤 재화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이 되고,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·사회구조가 변화, 발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수집, 정리,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 혹은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구정 홍보 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서구보의 경우, 산하기관,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,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하여 접수된 자료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, 개인에 관한 정보가 편집위원회에 의한 수집, 정리, 보관 및 전파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
- 구보 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위원회는 구보에 게재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기록 등이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개인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, 사용중지, 봉쇄,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자기정보관리통제권)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.
-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보발행조례 제11조 제4항 “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자료 제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단순히 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,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. 다만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「특별한 사정」은 예외적인 사항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엄격하게 해석,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